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37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3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2004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합50689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1. 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2. D

피고, 피상고인 2.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2004744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이 2011. 8. 24.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D는 B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D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임대차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해회사'라 한다)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및 제527조의5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해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해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함과 아울러 추가로 판단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여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기존채무만을 부담하는 한편, A은 그 외의 잔존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 원고는 분할되는 회사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회사분할 사실을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A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사분할 사실 및 이의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 또한 2011. 6. 17.자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당시에, 원고가 A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합병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하고 분할합병 사실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합병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라)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신용보증 한도액의 축소에 관한 사정을 위 법리와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수혜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참조), 나아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6. 20. A과 사이에 A이 2002. 12. 20.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은 2006. 6. 20.부터 2007. 6. 19.까지, 보증금액은 127,500,000원으로 정하여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A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매년 연장해 오다가 2011. 6. 17.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6.

15.까지'로 변경하는 약정(이하 '2011. 6. 17.자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의 위 보증 아래 기업은행과 A은 2002. 12. 20.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여신기간을 매년 연장해 오다가 2011. 6. 17. '여신만료일을 2011. 12. 20.까지'로 변경하는 약정(이하 '2011. 6. 17.자 대출거래조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A이 2011. 9. 18.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11. 12. 21.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22,891,20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⑤ 한편 피고 C은 2010. 9. 8. A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여 분할합병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신용보증은 특정채무인 2002. 12. 20.자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으로서, 2011. 6. 17.자 대출거래조건 변경약정은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2011. 6. 17.자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역시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경개가 아니라 그 보증조건을 단순히 갱신한 것에 불과하여, 2002. 12. 20.자 대출계약과 제1신용보증약정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에 2002. 12. 20.자 대출계약과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분할합병 후에 2011. 6. 7.자 대출거래조건 변경약정 및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원고가 2011. 12. 21.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으로써 A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피고 C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A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 및 그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에서 배당법원은 2012. 10. 30.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32,454,9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② 그 후 배당법원은 2012. 11. 7.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위하여 32,462,076원을 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3. 1. 29. 225,474,8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B에 대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1심에서 그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 배당법원은 원고에게 위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B에 대한 이 사건 1심판결 확정일에 위 배당액 32,454,963원의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그 수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배당액

수령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C의 위 배당액에 의한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유보공탁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